

□ 변경 대비표

2015년 2월 3일

◆ 해당 집합투자기구

(1)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

(2)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

◆ 집합투자규약 - 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28조(환매연기)	법 개정사항 반영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p> <p>③~⑥ <생략></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2.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p> <p>③~⑥ <현행과 같음></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법 개정사항 반영	<p>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① <좌 동></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p><신설></p> <p>③ <신설></p> <p>④ <생략></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p>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부칙	<신설>	<p>부 칙(2)</p>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p>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법 개정사항 반영, 세제혜택 문구 정정

항목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	법 개정사항 반영	<p>1. ~ 12. <생략></p> <p><신설></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1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 등	세제혜택 문구 정정	<table border="1"> <tr> <th data-bbox="499 100 656 177">구분</th> <th data-bbox="656 100 1330 177">주요 내용</th> </tr> <tr> <td data-bbox="499 177 656 292">세제혜택</td> <td data-bbox="656 177 1330 292">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u><신설></u></td> </tr>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u><신설></u>	<table border="1"> <tr> <th data-bbox="1339 100 1496 177">구분</th> <th data-bbox="1496 100 2181 177">주요 내용</th> </tr> <tr> <td data-bbox="1339 177 1496 292">세제혜택</td> <td data-bbox="1496 177 2181 292">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td> </tr>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u><신설></u>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세제혜택 문구 정정	<p>나. 과세</p> <p>(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9 467 656 616">세제혜택</td> <td data-bbox="656 467 1330 616">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u><신설></u>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td> </tr> </table>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이하 생략></p>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u><신설></u>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p>나. 과세</p> <p>(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339 467 1496 616">세제혜택</td> <td data-bbox="1496 467 2181 616">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td> </tr> </table>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u><신설></u>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법 개정사항 반영	<p>하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가. 의무해지</p> <p>(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p>	<p>하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가. 의무해지</p> <p>(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p>								

<p>공시에 관한 사항</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고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p><u><신설></u></p> <p>나. 임의해지</p> <p>(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u><신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p>고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p><u>-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p> <p>나. 임의해지</p> <p>(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u>-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p>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p>	<p>집합투자업자 내 부기준 변경 반영</p>	<p><증권거래></p> <p>① 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p><증권거래></p> <p><u>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 대비 수익</u> - <u>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u>

<p>사항</p> <p>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p>	<p>-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p> <p>-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p> <p>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p>-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p> <p>-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p> <p>-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p> <p>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p> <p>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p> <p>다. 마케팅비용</p> <p>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p> <p>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p> <p><장내파생상품거래></p> <p><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p>	<p>-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재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p> <p>2) 선정방법</p> <p>-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월 평가하여 20개 이하로 선정</p> <p>3) 평가항목</p> <p>- 자료 및 정보의 질, 펀드 성과 기여도,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 등의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과 주문집행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정보사항의 신속성,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 결재의 안정성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등 주문집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p> <p><장내파생상품거래></p> <p>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p>
----------------------------------	---	--

◆ 간이투자설명서 - 법 개정사항 반영, 세제혜택 문구 정정

항목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	법 개정사항 반영	<p>1. ~ 12. <생략></p> <p><신설></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1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제청 및 해</p>

			<p>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주요 투자위험</p>	<p>법 개정사항 반영</p>	<p>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p><신설></p>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p> <p>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p>								
<p>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6-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 등</p>	<p>세제혜택 문구 정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제혜택</td> <td>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제혜택</td> <td>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p>II. 매입·환매관련 정보 2. 과세</p>	<p>세제혜택 문구 정정</p>	<p>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제혜택</td> <td>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신설>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td> </tr> </tbody> </table> <p><이하 생략></p>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신설>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p>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제혜택</td> <td>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td> </tr> </tbody> </table> <p><이하 현행과 같음></p>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신설>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주요 내용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